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파운트 로보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□ 변경 사항 : ① 제7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

- ②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-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⑤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5. 3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</u> 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
요약정보
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자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자산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

		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나 주식의 가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4. 17. 기준</u>  <u>2024. 3. 29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4. 4. 1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투자자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 (생략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
나.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 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수 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 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 (생 략)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. (생략) 또 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수 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 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습니다.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 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(생 략)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 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 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습니다. (생략)
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	<u>표준편차 : 8.82%</u>  (신설) 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 상액(97.5% VaR 모형 사 용 : 16.13%</u> 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<u>2024.5.3 : 투자위험등급 산 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"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"에서 "일간 수익률 의 최대 손실 예상액" 기준 으로 변경</u> 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 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

		경우 <u>표준면차</u>	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11. 매입, 환매, 전 환절차 미 기준가 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(신 설)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u>&lt;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 수수료 부과 여부&gt;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7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4. 4. 17. 기준</u>  <u>2024. 3. 29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200</u> 만원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</u>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3.1.1</u> 이후 연금수령 하는 분부터 적용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분리과세한도 : <u>1,500</u> 만원 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500</u> 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<u>24.1.1</u> 이후 연금수령 하는 분부터 적용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7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4. 4. 17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4. 4. 1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7기 재무제표 갱신에 따른 변경	-	<u>2024. 4. 17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 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3. 31. 기준</u>